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5793호 2013년 12월 26일(목)

경 상 북 도

■ 규　　칙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경상북도의회 규칙 제52호) ····· 6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의회 규칙 제53호) ····· 9

회람								

발행:경상북도　편집:대변인실

■ 지시사항

○ 도지사 지시사항 ····· 40

■ 고 시

○ 용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3-560호) ····· 41

○ 육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3-561호) ····· 43

○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3-562호) ····· 45

○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3-563호) ····· 46

○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3-564호) ····· 50

○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3-565호) ····· 53

■ 공 고

○ 전기사업(태양광, 풍력발전) 행정처분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3-1386호) ····· 57

○ 공인 등록 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13-1388호) ····· 59

○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13-1389호) ····· 61

○ 청문출석통지 공시송달(경상북도 공고 제2013-1390호) ····· 62

○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경상북도 공고 제2013-1391호) ····· 65

○ 시정명령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13-1393호) ····· 67

○ 2014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도 문예진흥기금) 시행계획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3-1396호) ····· 69

시 군

■ 고 시

○ 도시관리계획(오류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13-170호) ····· 73

○ 김천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및 고시(김천시 고시 제2013-1776호) ····· 76

○ 김천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김천시 고시 제2013-1777호) ····· 92

○ 영천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골프장,도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영천시 고시 제2013-87호) ····· 96

○ 상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상주시 고시 제2013-913호) ····· 98

■ 공 고

○ 칠곡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위한 열람공고(칠곡군 공고 제2013-670호) ····· 103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74호) ····· 105

○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75호) ····· 107

○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76호) ····· 108

○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77호) ····· 109

○ 하천점용 허가기간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80호) ····· 110

○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82호) ····· 111

○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84호) ····· 112

○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85호) ····· 113

○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87호) ····· 114

○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91호) ····· 115

■ 공 고

○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공고(영천소방서 공고 제2013-14호) ····· 116

○ 공시송달공고(성주소방서 공고 제2013-13호) ····· 117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17일

경상북도의회 규칙 제52호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를 각각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로 하고, 제89조 및 제9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여야 한다.

제90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연설, 예산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시정연설, 공청회, 중요 안건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8조(녹음·녹화 등) ① ~ ④ (생략)	제88조(녹음·녹화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9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여야 한다.
〈신 설〉	제90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연설, 예산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시정연설, 공청회, 중요안건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⑤ (생략)	제91조 (현행 제89조와 같음)
제9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 ② (생략)	제92조 (현행 제90조와 같음)
제91조(의사의 비공개) (생략)	제93조 (현행 제91조와 같음)
제92조(심문 및 변경) ① ~ ② (생략)	제94조 (현행 제92조와 같음)
제93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 ② (생략)	제95조 (현행 제93조와 같음)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17일

경상북도의회 규칙 제53호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관사항 원칙) ①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 범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 통·폐합 또는 조직개편 등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되거나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연계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는 주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특정분야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하나의 기관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원회에서 분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간에 협의를 거쳐 일정과 범위를 정한다.

④ 원활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을 재조정하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특별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3조제3항에 의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조사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 협의 및 통보) ① 상임위원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해당연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를 부위원

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제2차 정례회 집회 35일전(10월1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제2차 정례회 집회 25일전(10월11일)까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관계 상임위원회 간의 경합 감사의 조정
3. 선정된 대상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여부
4. 선정된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5. 선정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정 여부
6. 그 밖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감사계획 확정 및 보고) ① 상임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②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사무조사)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특정사안”이라 함은 경상 북도와 경

상북도교육청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중 특정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발의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조사 발의서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조사위원장이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제안하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내용을 조사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기관 승인) ①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 각 단서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감사나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본회의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려면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의 취지 설명을 듣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감사계획 승인 및 이송) ① 각 상임위원장은 해당연도 감사계획을 본회의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을 종합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제2차 정례회기 직전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와 교육감은 이송 받은 감사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서류제출요

구,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서를 제2차 정례회 집회 3일전(11월2일)까지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과 단축)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해당 조사위원회나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한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이나 단축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제10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에도 필요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관 위원장의 협조를 받아 의장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요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서류제출 요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서는 따로 제출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도지사나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과

소관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증인·참고인의 불출석 이유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송달방법)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요구서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선서) 조례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의 사전 안내문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증언) ① 증인은 공개될 경우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증인은 거부사유를 감사나 조사 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증인의 증언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증인의 증언이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단시킬 수 있으며,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원활한 감사 또는 조사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인을 지명하여 퇴장시킬 수 있다.

제15조(비용지급의 방법) ① 조례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증인·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에 의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용 청구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청구서에 수령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장소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또는 조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보조자석, 기관 관계자석, 방청석 등을 각각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에 대한 방문 감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장을 현지에 설치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장의 질서유지와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0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현지확인 감사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미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척과 회피의 절차)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의 중지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해 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당해 의원이 제1항의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2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 경우 당해 의원은 표결 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회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 중에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또는 조사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활동을 종료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집행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를 실시한 상임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6호 서식, 제17호 서식 및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보고서 제출과 본회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식 중 “시정·처리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기관이 그 타당성 또는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건의·촉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해당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도지사와 교육감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지적사항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와 교육감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별지 제19호 서식 및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다음년도 연 2회(2월, 11월) 이상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또는 조사 기록) ①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기록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의장과 위원장은 감사 또는 조사와 관계된 기록·문서 기타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 및 고발)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의장이 위반사실을 통보한 경우 도지사·교육감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10명 이상이 연서하여 발의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소속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에서 고발하기로 의결한 경우 증거자료 조사나 재판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지정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회

1. 감사 목적
2. 감사기간
3. 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 편성방침, 감사위원회명, 위원명단, 감사보조요원
5. 감사세부일정 및 장소

일 시 (장 소)	대 상 기 관	출석요구 증인 (관계공무원)	주 요 내 용

6.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나. 주요감사사항
   다. 감사진행순서
   라. 현지확인 진행순서
7.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가. 서류제출요구 : 별첨
   나. 증인(참고인) 출석범위
8.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9.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행정사무조사 발의서

수신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제 목 : ○○○○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합니다.
붙임 : ○○○○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발의 이유서) 1부. 끝.

년 월 일

발의자 : ○ ○ ○ (서명 또는 날인)
외 ○○인
(발의 찬성의원 서명부 붙임)

○○○○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발의 이유서)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 ○ ○·○ ○ ○
의원(○인)
(찬성자 ○인)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기관
4. 조사범위 및 내용
5. 특별위원회 구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3호 서식]

○○○○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위원회

1. 개요
   가. 조사목적
   나. 관련근거

2. 세부추진계획
   가. 조사기간
   나. 조사위원회 또는 조사반 편성
   다. 조사대상 기관
   라. 주요 조사사항(조사대상 사무범위)
   마. 조사일정 및 장소
   바. 조사요령(착안사항)
   사. 조사진행순서
   아. 증인 등의 출석범위
   자. 조사대상기관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자료
   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보고 요구서
      2)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3) 서류(자료)제출 요구서 목록 및 작성요령 등

[별지 제4호 서식]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위원장

제○○○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차 ○○○○위원회(. . .) 에서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또는 제6호)에 따라 다음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

감사(조사)대상 기관	성격 및 근거	감사(조사)이유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단축) 요구서

수신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제 목 : ○○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단축) 요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단축) 코자 요청합니다.

위원회 명	조사활동기간 연장(단축)		연장(단축) 이유
	당 초	변 경	
	~ (일간)	~ (일간)	

년 월 일

○○ 조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의원 10명 서명 또는 날인)

※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보 고 요 구 서

수신자 :

제 목 : ○○○○에 관한 보고 요구

○○○○년 ○○월 ○○일 제○○○○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에서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 기관에 대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추진상황 등)을 청취하기로 의결 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 보고일시 :
3. 보고장소 :
4. 보 고 자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 ○○○에 관한 보고 요구서 1부. 끝.

경상북도의회의장 직인

문서번호(시행일)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7호 서식]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수신자 :

제 목 : ○○○○에 관한 서류제출 요구

○○○○년 ○○월 ○○일 제○○○○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에서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에 관하여 서류(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 제출장소 :
3. 제출수량 :
4. 유의사항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 ○○○○에 관한 서류제출 요구서 1부. 끝.

경상북도의회의장 직인

문서번호(시행일)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8호 서식]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수신자 :
제 목 : 증인 출석 요구

1. ○○○○년 ○○월 ○○일 제○○○○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에서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인출석을 요구하오니,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 석 일 :
나. 출석장소 :
다. 요구사유 :
라. 준 비 물 : 출석요구서, 인장, 신분증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 증인 출석 요구서 1부. 끝.

경상북도의회의장 직인

문서번호(시행일)

※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9호 서식]

참 고 인 출 석 요 구 서

수신자 :

제 목 : 참고인 출석 요구

○○○○년 ○○월 ○○일 제○○○○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에서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오니,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 석 일 :

나. 출석장소 :

다. 요구사유 :

라. 준 비 물 : 출석요구서, 인장, 신분증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 참고인 출석 요구서 1부. 끝.

경상북도의회의장 직인

문서번호(시행일)

※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10호 서식]

증인·참고인 불출석 이유서

수신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제 목 :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회신(불출석 이유서 제출)

1. 귀 의회에서 ○○○○○-○○○호(. . .)로 본인에게 송달한 증인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였으나, ○○○○○ 이유로 귀 의회에 출석할 수 없어

2.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이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증빙서류(진단서 등) 1부. 끝.

년 월 일

증인·참고인 : ○ ○ ○ (서명 또는 날인)

※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별지 제11호 서식]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상북도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의장의 통보등으로 도지사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반장)

[별지 제12호 서식]

증인·참고인 출석 비용 청구서

청구금액 : 금 원(₩)

○ 출 석 인 :
○ 출석일시 :
○ 출석장소 :
○ 청구내역 (단위:원)

구 분	종별(등급)	지급기준액	청구금액	비 고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계				

○ 입금계좌
- 거래은행 : 은행(지점)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상기 본인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였기에 출석비용을 위 계좌로 입금 의뢰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의회의장(○○○○위원장) 귀하

※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별지 제13호 서식]

현지확인 감사(조사)실시 통보서

수신자 :

(경유)

제 목 :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조사)실시 통보

○○○○년 ○○월 ○○일 제○○○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에서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확인반 구성 :
4. 대 상 :
5. 방 법 :

붙임 :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조사)실시계획 1부. 끝.

경상북도의회의장 직인

문서번호(시행일)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14호 서식]

감사(조사) 제척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의결내용 :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로 ○○○ 의원에 대하여 특정사안에 한하여 감사(조사) 참여를 제척

2. 신청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

3. 신청이유 :

○○○○년 ○○월 ○○일 제○○○○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 의결로 감사(조사) 위원에서 제척되었으나, 위 의결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다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 의원 : ○ ○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의회의장(○○○○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회 피 신 청 서

1. 회피신청 사안 :

2. 회피신청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제4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제4항

3. 회피신청 이유 :

위 사안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어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공정을 기하고자 회피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피신청 의원 : ○ ○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의회의장(○○○○위원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회

1. 감사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 기관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운영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나. 감사일정

5. 주요감사 실시내용 (소관별, 사항별)
6. 감사결과 처리의견

대상기관	소계	시정 · 처리	건의 · 촉구	제도개선

가.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나. 시정·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촉구요구사항

라. 제도개선사항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붙임)

[별지 제17호 서식]

○○○○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위원회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기관
4. 조사실시 경과

가. 조사반 편성·운영

일 시	대상기관	조사장소	비 고

나. 조사일정

5. 주요조사 실시내용 (소관별, 사항별)
6. 조사결과 처리의견

가.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대상기관	소계	시정 · 처리	건의 · 촉구	제도개선

나. 시정·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촉구사항

라. 제도개선사항

7. 기타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별첨)

[별지 제18호 서식]

감사(조사)결과 의견서

○○○○위원회

○ 대상기관 : ○ 위원 : (서명 또는 날인)

구 분	내 용	비고
시정·처리요구사항 (건)		
건의·촉구사항 (건)		
제도개선사항 (건)		
기 타 사 항 (건)		

[별지 제19호 서식]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시정·처리 (단위 : 건)

상임위원회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계	완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계						

○ 건의·촉구 (단위 : 건)

상임위원회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계	완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계						

○ 제도개선 : 동일서식 활용

처리결과 분류기준

- 완 료 : 임시 또는 긴급조치를 포함하여 중·단기적으로 조치가 완료된 사항
- 추진중 :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시책에 반영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
- 검토중 : 법령상의 규제 또는 예산 미확보, 민원발생, 중앙부처 등과 협의 지연 등으로 착수하지 못한 사항
- 조치불가 : 검토결과 필요성이 없거나 시행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

[별지 제20호 서식]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소 관 상임위원회		구분		연번	담당부서	
제 목						
지적사항 요 지						
현 황						
처리상황						
진 도	완료( ), 추진중( ), 검토중( ), 조치불가( )					
담 당 자	국장 , 과장 , 담당 , 실무자					

※ 구분란 : 시정·처리, 건의·촉구로 표기

[별지 제21호 서식]

고 발 장

1. 고 발 인
2. 피고발인
3. 고발취지
4. 범죄사실
5. 고발이유
6. 증거자료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고발인 경상북도의회의장 직인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인적증거, 증거서류, 증거물, 기타 증거)

○○지방검찰청 귀중

경 상 북 도

지 시 사 항

도지사 지시사항

– 2013. 12. 23. 확대간부회의시 –

관리번호	지 시 내 용	담당부서
2013-85	○ 국제 관계 인맥 체계적 관리 •문화EXPO, 실크로드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연계된 해외인사(유네스코, UNWTO 등)에 대해서는 네트워크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안부메일, 연하장 발송 등으로 한 층 더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도록 할 것	국제 비즈니스과
2013-86	○ 경주문화엑스포 상시개장 활성화 방안 강구 •경주문화엑스포 공원을 상시 개장했으나 아직까지 콘텐츠, 참가 규모면에서 상시공연에 걸맞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경주시, 관광공사, 지역대학 등과 연계 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경주에서 머무르고 쉬어갈 수 있는 문화엑스포 공원 상시 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문화교류 협력과 문화엑스포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3-560호

용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 업 목 적** : 용천지구 내 수리시설물중 설치된 지 오래되어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토공수로를 구조물화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며, 관개

급수 원활로 영농편의에 따른 민원해소 등 식량증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내용 및 구역 (변경없음)

○ 지 구 명 : 용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삼분리, 안계면 봉양리, 단밀면 용곡리 일원

○ 수혜면적 : 416.8ha

○ 사업계획개요

• 용천지 : 제당 덧쌓기, 여·방수로 및 사통·복통 보수 1식

• 개천지 : 제당 사석보강, 여·방수로 및 사통·복통 보수 1식

• 용곡2양수장 보수 1식

3. 사업비소요액 : 3,773백만원 (변경없음)

4. 사업예정기간 : (당초) 2009. 12. ~ 2013. 12.

(변경) 2009. 12. 22. ~ 2014. 12. 31. (1년연장)

5. 사 업 효 과 : 재해예방 및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

8. 관계도서열람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054-862-870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경상북도 고시 제2013-561호

육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 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경산시 용성면, 청도군 금천면 일대 5개리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저수지 1개소와 용수로를 설치하여 농촌지역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생활환경 및 영농편의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지 구 명 : (당초) 육동지구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변경) 육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부일리외 3개리,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일원

다. 수혜면적 : 116.0㏊

라. 사업개요

○ 수 원 공 : 저수지 1개소(L=192m, H=36m, 총저수량 1,182천톤)

○ 용 수 로 : 9조 14.498km

○ 도 로 : 1조 1.943km

3. 사업비 소요액 : (당초) 16,759백만원

(변경) 17,031백만원

4. 사업 예정기간 : (당초) 2009. 12 ~ 2016. 12.(7개년)

(변경) 2009. 12 ~ 2016. 12. 31 (7개년)

5. 사업의 효과

가. 편익비용비율(B/C) : 1.52(5.5%할인시), 내부투자수익율(I.R.R) : 8.5%

나. 증산량(미곡환산) : 556.5M/T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장

7. 사업내용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의 세목조서 : 별첨

8. 관계도서열람 :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053-819-60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경상북도 고시 제2013-562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다 음 -

법 인 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대표자	소 재 지	산림사업의 종 류	비고
㈜상지개발	경북2013-055	2013.12.27	김도완	경북 포항시 남구 유동길 30, 103호(효자동, 단비마을빌라)	도시림등조성	업종 추가
㈜기림임업	경북2013-056	2013.12.27	이기일	경북 고령군 고령읍 덕경길 7	숲가꾸기및 병해충방제	신규

경상북도 고시 제2013-563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포항국가산업단지(제2연관단지)내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주)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 포항국가산업단지 제2연관단지내 성우오토모티브(주) 부지조성 사업

○ 변경 : 포항국가산업단지 제2연관단지내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주) 부지조성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기정 : 성우오토모티브(주) 대표이사 엄 준 섭, 정 몽 용

○ 변경 :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주) 대표이사 엄 준 섭, 김 병 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

○ 기정 : 포항국가산업단지(제2연관단지)내 성우오토모티브(주)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필요한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공장건설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포항국가산업단지(제2연관단지)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장건설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 변경 : 포항국가산업단지(제2연관단지)내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주)의 자동차부품제조업에 필요한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공장건설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포항국가산업단지(제2연관단지)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장건설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나. 사업의 개요

○ 기정 : 79,790㎡(공장용지 48,490㎡)

○ 변경 : 79,592㎡(공장용지 48,239㎡)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 1623번지 일원

나. 면 적 : 기정 - 79,790㎡

변경 - 79,592㎡ (감 198㎡)

※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가목에 의한 민간개발

나. 시행기간

○ 기정 : 2010년 11월 4일 ~ 2013년 12월 31일

○ 변경 : 2010년 11월 4일 ~ 2014년 6월 30일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포항국가산업단지 제2연관단지(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4,004,631.8	100.0	
공 장 용 지	3,225,385.2	80.5	
조 성 부 지	2,315,137.0	57.8	
기 타	910,248.2	22.7	
공공용지	360,033.1	9.0	
도로	302,622.9	7.6	
구거	57,410.2	1.4	
지원시설용지	59,716.3	1.5	
지원시설	59,716.3	1.5	
녹 지	359,497.2	9.0	
공원	231,544.0	5.8	
수도시설용지	127,953.2	3.2	

나. 금회신청부지 내 시설배치계획(변경)

구 분		계	공장부지	도로	법면녹지	원형녹지	비고
면적 (㎡)	기정	79,790	48,490	2,955	16,995	11,350	
	변경	79,592	48,239	3,339	16,862	11,152	
구성비 (%)	기정	100.0	60.8	3.7	21.3	14.2	
	변경	100.0	60.6	4.2	21.2	14.0	

다. 유치업종 : 자동차부품제조업(변경없음)

7. 위치도, 개발계획도, 시설배치계획도 : 게재생략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관계도서는 포항시 산업단지지원과 (☏054-270-38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경상북도 고시 제2013-564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포항국가산업단지(제2연관단지)내 ㈜세아제강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포항국가산업단지 제2연관단지내 (주)세아제강 부지조성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주)세아제강 대표이사 이 휘 령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포항국가산업단지(제2연관단지)내 (주)세아제강의 1차금속제조

업에 필요한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공장건설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포항국가산업단지(제2연관단지)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나. 사업의 개요 : 56,500㎡(공장용지 38,135㎡)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 산63번지 일원

나. 면 적 : 56,500㎡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가목에 의한 민간개발

나. 시행기간 : 기정 : 2012. 03. 승인고시일 ~ 2013년 12월 31일

변경 : 2012. 03. 승인고시일 ~ 2014년 06월 30일

6.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가. 포항국가산업단지 제2연관단지(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4,004,631.8	100.0	
공 장 용 지	3,225,385.2	80.5	
조 성 부 지	2,315,137.0	57.8	
기 타	910,248.2	22.7	
공공용지	360,033.1	9.0	
도로	302,622.9	7.6	
구거	57,410.2	1.4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지원시설용지	59,716.3	1.5	
지원시설	59,716.3	1.5	
녹 지	359,497.2	9.0	
공원	231,544.0	5.8	
수도시설용지	127,953.2	3.2	

나. 금회신청부지 내 시설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공장용지	조경용지	녹지용지	비고
면적(㎡)	56,500	38,135	12,135	6,230	
구성비(%)	100.0	67.5	21.5	11.0	

다. 유치업종(변경없음)

회 사 명	업 종
(주)세아제강	1차금속 제조업(24)

7. 위치도, 개발계획도, 시설배치계획도 : 게재생략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관계도서는 포항시 산업단지지원과(☏054-270-38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

경상북도 고시 제2013-565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포항국가산업단지(제2연관단지)내 (주)코스틸포항공장, 동일산업(주)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포항국가산업단지 제2연관단지내 (주)코스틸포항공장, 동일산업(주) 부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주)코스틸포항공장 대표이사 김 정 빈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오 순 택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포항국가산업단지(제2연관단지)내 (주)코스틸포항공장, 동일산업(주)의 1차금속제조업에 필요한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공장건설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포항국가산업단지(제2연관단지)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나. 사업의 개요 : 87,110㎡(공장용지 57,890㎡)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 산81-3번지 일원

나. 면 적 : 87,110㎡

※ (주)코스틸포항공장 사용부지 : 77,973㎡, 동일산업(주) 사용부지 : 9,137㎡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시행방법 : 기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나목에 의한 민간개발

변경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 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민간개발

나. 시행기간 : 기정 - 2012년 02. 승인고시일 ~ 2013년 12월 31일

변경 - 2012년 02. 승인고시일 ~ 2014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가. 포항국가산업단지 제2연관단지(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4,004,631.8	100.0	
공 장 용 지	3,225,385.2	80.5	
조 성 부 지	2,315,137.0	57.8	
기 타	910,248.2	22.7	
공공용지	360,033.1	9.0	
도로	302,622.9	7.6	
구거	57,410.2	1.4	
지원시설용지	59,716.3	1.5	
지원시설	59,716.3	1.5	
녹 지	359,497.2	9.0	
공원	231,544.0	5.8	
수도시설용지	127,953.2	3.2	

나. 금회신청부지 내 시설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공장용지	내부도로 용지	조경용지	원형보전 용지	비고
면적 (㎡)	코스틸 사용부지	77,973	50,420	3,770	21,863	1,920	
	동일 사용부지	9,137	7,470	-	1,667	-	
	계	87,110	57,890	3,770	23,530	1,920	
구성비(%)		100.0	66.5	4.3	27.0	2.2	

다. 유치업종(변경없음)

회 사 명	업 종
(주)코스틸포항공장	1차금속 제조업(24)
동일산업(주)	1차금속 제조업(24)

7. 위치도, 개발계획도, 시설배치계획도 : 게재생략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관계도서는 포항시 산업단지지원과(☏054-270-38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

경상북도 공고 제2013-1386호

전기사업(태양광, 풍력발전) 행정처분 공고

「전기사업법」 제9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및 같은 법 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2」 제2호에서 정한바와 같이 행정처분(사업허가 취소)하고 그 내용을 아래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아 래-

허가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용량 (kW)	행정처분내용	
					처분명(사유)	취소일
2009-118	구암 태양광 발전소(주)	구암태양광 발전소㈜ 강 호 섭	경북 의성군 점곡면 구안리 산14, 14-3, 14-4	1,000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사업개시 의무 위반	'13.12.20

허가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용량(㎾)	행정처분내용	
					처분명(사유)	취소일
2010-25	㈜유정쏠라 제1발전소	㈜유정쏠라 최 남 팔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48	100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사업개시 의무 위반	'13.12.20
2010-26	㈜유정쏠라 제2발전소	㈜유정쏠라 최 남 팔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48	100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사업개시 의무 위반	'13.12.20
2010-27	진만 태양광 발전소	이 진 만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48	100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사업개시 의무 위반	'13.12.20
2010-28	병식 태양광 발전소	정 병 식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48	100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사업개시 의무 위반	'13.12.20
2010-29	영진 태양광 발전소	이 덕 수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48	100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사업개시 의무 위반	'13.12.20
2010-34	백송발전소	이 준 상	경북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산5-1	400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사업개시 의무 위반	'13.12.20

허가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용량(kW)	행정처분내용	
					처분명(사유)	취소일
2010-38	에스티에너지 풍력발전소	에스티에너지(주) 김 임 선	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산17-3	3,000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사업개시 의무 위반	'13.12.20

◆◆◆

□ 신규등록 공인

공 인 명	인 영	최초 사용년월일	등 록 사 유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서부지소 경리관의인		2014. 1. 2.	제1관서 지정에 따른 회계관계 공인 신조(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제3조)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서부지소 지출원의인		2014. 1. 2.	〃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동부지소 경리관인		2014. 1. 2.	〃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동부지소 지출원인		2014. 1. 2.	〃

경상북도 공고 제2013-138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명 칭 (대표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자 본 금	주영업소 소재지
주식회사 한아건설 (곽동석)	2013.12.23.	경북130006	500,000천원	경북 울릉군 울릉군 울릉순환로 221-3
MS D&C 주식회사 (강민성)	2013.12.23.	경북130007	300,000천원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동로 168(민성빌딩 1층)

경상북도 공고 제2013-1390호

청문출석통지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청문출석통지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미달로 등록말소 처분

나. 당사자 및 청문일시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업종	등록번호	청문일시
삼희건설(주)	김성원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41번길 18, 대이우체국 3층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16-0080 16-0007	2014. 1. 9. 14:00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보증가능금액)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설업 등록말소

마.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바. 청문주재자 : 경북도청 도시계획과 지방시설주사 손병순 / 민병철

사. 청문장소 : 경북도청 도시계획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아. 청문참석자 :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자. 지참서류 : 참석자 도장,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자격입증서류를 지참, 청문통지서 내용과 다를 시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 등

차. 의견제출 : 청문 전일까지

2.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4.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청 도시계획과 건설행정담당(☏053-950-20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진술서(서식) 1부.

의 견 진 술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	성명(명칭)	
	상 호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상 호 (전화 :)
직 위
성 명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13-1391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공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행정처분 내용

가.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업종 (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주)거진종합건설 (조현철)	경북 구미시 도봉로 82, 7층	토목건축 (16-0189)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영업정지 5월 (2014.1.13~2014.6.12)

나.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다. 처분일자 : 2013. 12. 11.

2. 귀 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리니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영업정지 전일까지 경북도청(도시계획과)으로 제출하여 처분사실을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본 처분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통지하여 발주자의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규정에 위반(건설공사 신규계약 등)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기준 미달사항은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보완하여 경북도청(도시계획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우리 도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상북도 공고 제2013-1393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시 정 명 령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공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시정명령 대상자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대상업종 (등록번호)	공 사 명 (하도급업체/하도급계약금액)
㈜거진종합건설	구미시 도봉로 82, 7층(도량동, 지엠프라자)	토목건축 (16-0189)	중앙경찰학교 생활관 증축 건축공사(긴급) ((주)이온테크/343백만원)
			레이몰드(주) 수원공장신축공사 ((주)동림설비/118백만원)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대상업종 (등록번호)	공 사 명 (하도급업체/하도급계약금액)
			영주동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기타공사 ((주)홍맥건축디자인/52백만원)
스타종합건설(주)	포항시 남구 해도동 207-22	건축 (16-0476)	신흥동 별모텔 숙박시설 신축공사 (동명건설산업(주)/133백만원)

2.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발주자에게 미통보

3.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4. 시정내용 : 2014. 01. 17.(금)까지 건설공사대장 발주자에게 통보

※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북도청 도시계획과(053-950-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정명령 일자 : 2013. 12. 18.

◈◈◈

경상북도 공고 제2013-1396호

2014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도 문예진흥기금) 시행계획 공고

경상북도에서는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예술창작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2014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도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공연예술 단체 및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12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접수 및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14. 1. 6(월) ~ 1. 17(금) ※ 접수마감일 18:00까지

2.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gb.artskorea.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지원기준**

1. 지원신청 단체(개인)는 하나의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선정 시 여타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 불가

※ 제한건수를 초과하거나, 국·도비 및 시·군비를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페널티 부여

2. 사업효과,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별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1. 지원대상사업

○ 경상북도의 문화예술진흥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신청대상 사업의 각 단위사업에 부합하는 사업

2. 지원신청 분야 및 세부장르

○ 문학, 시각예술(미술·사진),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연예, 종합예술, 국제교류협력, 개인예술가 창작지원

3. 지원규모

구 분	지원금액	비 고
집중지원	500 ~ 1,000만원	※ 사업규모 및 내용별 차등지원
일반지원	200 ~ 500만원	
신진작가 창작지원	100 ~ 300만원	

□ 신청자격

○ 경상북도내에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경상북도 소재 단체 또는 예술인으로서 각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자격이 있는 단체나 개인

□ 제출서류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인터넷 지원신청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으로 대체)

○ 각 지원 분야별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자세한 내용은「분야별 지원안내」참조)

○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단체에 한함)

□ 지원금 결정 및 확정통보

○ 지원신청 받은 사업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을 결정하며 심사결과는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14. 2월 예정)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반드시 지원기준 및 규모, 신청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신청안내문 및 작성요령(홈페이지 게재)을 숙지하여 본 공모에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는 반드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문화예술과(☎053-950-3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주시 고시 제2013-170호

도시관리계획(오류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도시계획시설(유원지:오류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경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 · 고시함

으로서 토지 이용규제 투명화

2. 도시관리계획(오류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가. 오류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개소		85,200	-	85,200		
기정	1	유원지	오류리 해변 일대	85,200	-	85,200	경고제65호 (79.3.20)	부지변경 없음

나. 오류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개소		85,200	-	85,200	부지변경 없음
기정 변경	1 2	편익시설	오류리 일원	4,210	증)660	4,870	
폐지	2	여 관	오류리 일원	4,760	감)4,760	-	
폐지	3	호 텔	오류리 일원	1,520	감)1,520	-	
기정 변경	4 1	야 영 장	오류리 일원	4,200	증)9,350	13,550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5	잔디광장	오류리 일원	1,500	감)1,500	-	
폐지	6	주 차 장	오류리 일원	7,370	감)7,370	-	
신설	3	편익상가시설	오류리 일원	-	증)1,880	1,880	
신설	4	편익숙박시설	오류리 일원	-	증)7,930	7,930	
기정	7	도 로	오류리 일원	3,200	증)1,070	4,270	
변경	5						
기정	8	백 사 장	오류리 일원	58,440	감)5,740	52,700	관리실, 화장실 등 포함
변경	6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게재 생략

4. 서류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경주시청 해양수산과(☎054-779-6323) 및 도시디자인과(☎054-779-6424)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김천시 고시 제2013-1776호

김천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및 고시

김천시 공고 제2013-1669호(2013.11.28)로 열람·공고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및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김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나. 사업조서

종류	명 칭 (노선)	위 치	사업량	시행자	사업기간	비고
도시계획도로	소로 2-33호선	김천시 평화동 32-3번지 일원	도로개설 L=150m	김천시장	인가일로부터 2년간	평화동 김천여중 앞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 조서와 같음

※ 관계도서는 김천시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문의처 : 김천시 도시주택과 도시개발 ☎ 054) 420-6356)

편입토지 보상 결정 및 개인별 지급조서

○ 토 지 조 서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목	현실적인 이용상황	도로편입		소 유 자 (등기부등본)		이해 관계인		
	동	지번			지번	지적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주 소	성명또는명칭
계					14필지	993					
1	평화	18-10	종	종	18-15	8	김천시 구름다리 3길 8(평화동)	김천중앙침례교회 강대성	근저당		포항축협
2	〃	18-5	답	답	18-14	76	김천시 구름다리 3길 10(평화동)	강봉구 표은경	근저당		자산새마을금고
3	〃	14-4	대	대	14-58	97	김천시 구름다리 3길 10(평화동)	강봉구 표은경	근저당		자산새마을금고
4	〃	14-21	답	답	14-61	106	김천시 봉산면 덕천1길 6-13	함수옥	근저당		농협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목	현실적인 이용상황	도로편입		소 유 자 (등기부등본)		이해 관계인		
	동	지번			지번	지적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주 소	성명또는명칭
5	〃	14-51	답	답	14-63	188	김천시구름다리3길 12-6 (평화동)	김백홍			
6	〃	14-22	대	대	14-62	165	김천시 중앙시장 2길 26, 203호 (모암동)	백준호	전세권		
7	〃	14-9	대	대	14-60	8	김펀시구름다리3길 12-14 (평화동)	유영욱			
8	〃	14-8	대	대	14-59	5	김천시 어모면 어모로 271	김정태			
9	〃	20-5	답	도로	20-5	69	대구 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3 (중동 179) DFC빌딩 11층 남측	재무부			
10	〃	22-1	대	대	22-1	36	김천시성안1길8 (성내동)	윤종원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목	현실적인 이용상황	도로편입		소 유 자 (등기부등본)		이해 관계인		
	동	지번			지번	지적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주 소	성명또는명칭
11	〃	32-16	대	대	32-20	6	김천시구름다리1길 20 (평화동)	김노미			
12	〃	32-11	대	대	32-11	36	대구 광역시 중구 달구벌 대로 1950, 106동 1703호 (남산동, 남산 그린타운 아파트)	이조광			
13	〃	32-17	대	대	32-17	51	김천시구름다리1길 22 (평화동)	최원홍			
14	〃	32-3	대	대	32-19	142	김천시 자산로169 (평화동)	김우연	근저당		농협

편입지장물 보상 결정 및 개인별 지급조서

○ 물 건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장물건명	규격및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 관계인		
	동	지번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및내용	주소	성명또는명칭
계			10건								
1	평화	14-53	담장	적벽돌(스텐)	11	m	김천시 구름다리 3길 8 (평화동)	김천중앙침례교회 강대성			
	〃	〃	현수막거치대	파이프조	1	식					
	〃	〃	견사및울타리	철재외	1	식					
	〃	〃	화단		1	식					
	〃	〃	소나무	R=25~30	2	주					
	〃	〃	향나무	R=20	2	주					
	〃	〃	백일홍	5년	3	주					
	〃	〃	수목		3	주					
				계							

일련번호	소재지		지장물건명	규격및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 관계인		
	동	지번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및내용	주소	성명또는명칭
2	평화	14-21	담장	블록(H=1.5)	23.2	m	김천시 봉산면 덕천1길 6-13	함수옥			
	〃	〃	담장	블록(H=2.0)	4×1/2	m					
	〃	〃	담장	블록(H=1.8)	10×1/2	m					
	〃	〃	대문	철재(문주포함)	1	식					
	〃	〃	대문	슬라브	1	식					
	〃	〃	포장	콘크리트	29	㎡					
	〃	〃	연못	조경석	1	식					
	〃	〃	화단	조경석 잔디	1	식					
	〃	〃	조명등		1	식					
	〃	〃	감나무	35년	1	주					
	〃	〃	향나무	R=25	2	주					
	〃	〃	향나무	R=20	2	주					

일련번호	소재지		지장물건명	규격및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 관계인		
	동	지번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주소	성명또는명칭
	〃	〃	히말라야시다	R=30	1	주					
	〃	〃	히말라야시다	R=20	1	주					
	〃	〃	엄나무	7년	1	주					
	〃	〃	목련	30년	1	주					
	〃	〃	매실나무	5년	1	주					
	〃	〃	단풍나무	30년	1	주					
	〃	〃	수목	회양목, 영산홍 사철나무 외	27	m					
				계							
3	평화	14-51	담장	블록 (H=2.0)	19×1/2	m	김천시 구름다리 3길 12-6 (평화동)	김백홍			
	〃	〃	담장	블록 (H=1.8)	10×1/2	m					

일련번호	소재지		지장물건명	규격및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 관계인		
	동	지번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및내용	주소	성명또는명칭
	〃	〃	담장	블록(H=1.8)	10×1/2	m					
	〃	〃	포장	콘크리트	30	㎡					
	〃	〃	목단	20년	1	주					
	〃	〃	엄나무	10년	1	주					
	〃	〃	모과나무	10년	1	주					
	〃	〃	장미나무	10년	1	주					
	〃	〃	영산홍	10년	1	주					
				계							
4	평화	14-4	주택	블록슬라브	51	㎡	김천시 구름다리 3길 10 (평화동)	강봉구 표은경			
	〃	〃	창고및보일러실	블록스레트	15	㎡					

일련번호	소재지		지장물건명	규격및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 관계인		
	동	지번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주소	성명또는명칭
	〃	〃	주택및 창고	블록 스레트	69.5	㎡					
	〃	〃	가추	철재함석	21	㎡					
	〃	〃	정자	목조 (바닥포함)	1	식					
	〃	〃	담장	블록조	4	m					
	〃	〃	담장	블록 (H=2.0)	4×1/2	m					
	〃	〃	담장	블록 (H=2.0)	19×1/2	m					
	〃	〃	담장	블록 (H=2.0)	23×1/2	m					
	〃	〃	수도 시설	바닥포함	2	식					
	〃	〃	장독대	콘크리트	1	식					
	〃	〃	포장	콘크리트	30	㎡					
	〃	〃	포장	보도블록	16	㎡					
	〃	〃	욕실및 화장실	블록 슬라브	16	㎡					
	〃	〃	계단	콘크리트	1	식					

일련번호	소재지		지장물건명	규격및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 관계인		
	동	지번					주소	성명	권리의종류및내용	주소	성명또는명칭
	〃	〃	대문	철재(문주포함)	1	식					
	〃	〃	대문	목조(파이프문주)	1	식					
	〃	〃	차량차단시설및철구조물	철재	1	식					
	〃	〃	빨래건조대	철재	1	식					
	〃	〃	조경바닥(잔디포함)	화강석,맷돌,적벽돌	22.00	㎡					
	〃	〃	화단		1	식					
	〃	〃	포도나무	4년(지주포함)	15	주					
	〃	〃	라일락	5년	4	주					
	〃	〃	소나무	5년	5	주					
	〃	〃	석류나무	15년	1	주					
	〃	〃	석류나무	5년	1	주					

일련번호	소재지		지장물건명	규격및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 관계인		
	동	지번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주소	성명또는명칭
	〃	〃	배나무	10년	1	주					
	〃	〃	무화과	10년	3	주					
	〃	〃	장미나무	6년	1	주					
	〃	〃	블루베리	4년	1	주					
	〃	〃	동백	4년	1	주					
	〃	〃	앵두나무	7년	1	주					
	〃	〃	구지뽕나무	7년	4	주					
	〃	〃	가죽나무	5년	3	주					
	〃	〃	사철나무		3	주					
	〃	〃	수목	영산홍, 단풍나무 외	41	주					
				계							
5	평화	14-22	주택	블록스레트	62.1	㎡	김천시 중앙시장2길 26, 203호 (모암동)	백준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장물건명	규격및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 관계인		
	동	지번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및내용	주소	성명또는명칭
	〃	〃	가추	파이프스레트	9	㎡					
	〃	〃	가추	파이프스레트	4	㎡					
	〃	〃	가추	파이프스레트	4	㎡					
	〃	〃	창고외	블록슬라브	3.3	㎡					
	〃	〃	포장	콘크리트	15	㎡					
	〃	〃	주택	블록스레트	25.5	㎡					
	〃	〃	대문	샷시조	1	식					
	〃	〃	포장	콘크리트	18	㎡					
	〃	〃	담장	블록(H=2.0)	23×1/2	m					
	〃	〃	담장	블록(H=1.8)	10×1/2	m					
	〃	〃	담장	블록(H=1.8)	4×1/2	m					
	〃	〃	담장	블록조(H=1.2)	4	m					
				계							

일련번호	소재지		지장물건명	규격및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 관계인		
	동	지번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및내용	주소	성명또는명칭
6	평화	14-8	주택(1층)	블록슬라브	39.4	㎡	김천시 어모면 어모로 271	김정태			
	〃	〃	주택(2층)	블록슬라브	28.9	㎡					
	〃	〃	화장실	블록슬라브	3	㎡					
	〃	〃	세면장	블록스레트	3.6	㎡					
	〃	〃	담장	블록조(H=1.8)	9	m					
	〃	〃	수도	-	1	식					
	〃	〃	창고	조적조	1	식					
	〃	〃	계단(1층소재)	콘크리트	1	식					
	〃	〃	계단(2층소재)	콘크리트	1	식					
	〃	〃	포장	콘크리트 및 보도블럭	30	㎡					
	〃	〃	대문	철재(문주포함)	1	식					
	〃	〃	대문	슬라브	1	식					

일련번호	소재지		지장물건명	규격및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 관계인		
	동	지번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주소	성명또는명칭
	〃	〃	담장	블록 (H=1.8)	4×1/2	m					
				계							
7	평화	22-1	주택	블록 스레트위 강판	35.02	㎡	김천시성안1길8 (성내동)	윤종원			
	〃	〃	주택 (1층)	블록 슬라브	39.78	㎡					
	〃	〃	주택 (2층)	조립식	28	㎡					
				계							
8	평화	32-11	주택	블록 스레트	34.4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1950, 106동 1703호 (남산동, 남산그린타운아파트)	이조광			

일련번호	소재지		지장물건명	규격및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 관계인		
	동	지번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주소	성명또는명칭
	〃	〃	주택	블록 슬라브	5.7	㎡					
	〃	〃	창고	블록 스레트	1.5	㎡					
	〃	〃	보일러실	목조 스레트	6.3	㎡					
	〃	〃	수도		1	식					
	〃	〃	계단	철재	1	식					
	〃	〃	대문	철재 (문주포함)	1	식					
	〃	〃	대문	슬라브	1	식					
				계							
9	평화	32-17	창고	철파이프 판넬	18.9	㎡	김천시 구름다리 1길22 (평화동)	최원홍			
	〃	〃	현관	조립식	2.47	㎡					
	〃	〃	수도시설	바닥포함	1	식					
	〃	〃	화단	블록조	1	식					

일련번호	소재지		지장물건명	규격및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 관계인		
	동	지번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및내용	주소	성명또는명칭
	〃	〃	포장	콘크리트(일부계단바닥)	34	㎡					
	〃	〃	대문	철재(철재문주)	1	식					
				계							
10	평화	32-3	담장	벽돌(H=2.2)	28	m	김천시 자산로 169 (평화동)	김우연			
	〃	〃	옹벽	콘크리트	11	m					
	〃	〃	포장	콘크리트	147	㎡					
				계							

김천시 고시 제2013-1777호

김천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김천시 고시 제2013-1636호(2013.11.1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된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유수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김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천시 양천동 56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김천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유수지) 사업

○ 명 칭 : 양금배수펌프장 설치사업

3. 면적 및 규모

○ 면 적 : 9,174㎡

○ 규 모

주 요 구 조 물	단 위	제 원	비 고
유 수 지	EL.m	H.W.L : 64.20m L.W.L : 62.30m	
	㎥/m	유효저수용량 : 11,800 유효수심 (H) : 1.90	
배수펌프장(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m	폭 : 30.9, 길이 : 20.3	
토 출 조 (H.W.L : 67.80m)	m	폭 : 24.8 높이 : 5.6 길이 : 11.6	
비상발전기실(디젤엔진발전기)	-	비상 2,000kW	
토 출 관 거(D2000mm 2련)	m	L = 41	
가 동 보	m	폭 : 35.0 , 높이 : 1.0	
농배수로 확폭(W=2.0m)	m	L = 266.8	
유수지 유입관거(폭:1.0, 높이:1.1)	m	L = 218.7	
고지배수관거(D1600mm)이설	m	L = 52	
농배수로 확폭	m	기존(2@1.2x1.3) L=17.0 신설(2@2.0x2.0) L=22.5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천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128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3. 12. 인가일 ~ 2014. 3.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조서와 같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무상귀속 할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지목	면 적(㎡)		소관청	비고
			지적	무상귀속면적		
김천시 양천동	566-1	도	79	79	국(농림축산식품부)	
김천시 양천동	1777-1	구거	3,140	3	국(국토교통부)	
김천시 양천동	1774-4	구거	12,027	231	국(국토교통부)	
김천시 지좌동	1046-1	천	622,457	19	국(국토교통부)	

8.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청 안전재난과(054-420-6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등 조서

□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			비고
	시	동					성 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명칭	
계			11필지			9,174						
1	김천	양천	567-9	답	159	44	김천시					
2	김천	양천	565-2	답	2,301	2,275	김천시					
3	김천	양천	567-10	답	360	35	김천시					
4	김천	양천	1	답	444	444	김천시					
5	김천	양천	2	답	1,424	1,424	김천시					
6	김천	양천	565-12	답	1,286	1,286	김천시					
7	김천	양천	566-2	답	4,955	3,256	김천시					
8	김천	지좌	1046-1	천	622,457	97	국 (국토교통부)					
9	김천	양천	566-1	도	79	79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김천	양천	1777-1	구	3,140	3	국 (국토교통부)					
11	김천	양천	1774-4	구	12,027	231	국 (국토교통부)					

영천시 고시 제2013-87호

영천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골프장,도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영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영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천시 임고면 효리 산84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 류 : 영천시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골프장, 도로)

나. 사업의 명 칭 : 영천 컨트리클럽 및 도로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체육시설(골프장) : A=1,359,557㎡

나. 진입도로 : L=1,462m, B=12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임고개발(주) 대표이사 유재신

나. 주 소 : 영천시 임고면 방목길 34-2번지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인가일로부터 ~ 2013. 12. 31.
- 변경 : 인가일로부터 ~ 2014. 6. 30.

6. 변경사유 : 진입도로 공기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변경 없음)

8.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9. 관계도서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054-330-63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상주시 고시 제2013-913호

상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상주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및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제86조 및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상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산39-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나. 사업의 명칭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연구시설

1) 시설사업 면적 : 123,592㎡

2) 토지이용계획 (단위 : ㎡)

용도별	계	교육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교육지원시설	녹지	공공시설	기반시설
면 적	123,592	15,090	10,388	10,999	60,215	6,717	20,183

나. 도로(중로3-3호선) : B=12m, L=806m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10년 12월

나. 준공예정일 : 2013년 12월 (당 초 : 2012년 12월)

5. 사업시행자

가. 주 소

1) 당 초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2) 변 경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나. 성 명

1) 당 초 : 국립생물자원관장

2) 변 경 : 환경부장관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등 물건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가. 연구시설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자
계					140,369	123,592				
1	도남동		158-1	전	1,024	25		상주시		
2	도남동		167-1	전	483	12		상주시		
3	도남동		170-4	답	5,114	5,114		상주시		
4	도남동		산39-8	임	9,447	1,406		상주시		
5	도남동		산39-9	임	7,498	763		상주시		
6	도남동		산39-12	임	768	749		상주시		
7	도남동		산39-21	임	115,738	115,423		상주시		
8	도남동		산80	구	297	100		국 (국토해양부)		

나. 도로시설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자
계					144,155.3	10,456				
1	도남동		92-3	답	73	28		상주시		
2	도남동		138-1	답	282	52		상주시		
3	도남동		139-1	전	133	16		상주시		
4	도남동		141-1	전	235	101		국 (국토해양부)		
5	도남동		158-1	전	1,024	468		상주시		
6	도남동		167-1	전	483	422		상주시		
7	도남동		168-3	전	384	68		상주시		
8	도남동		816-2	도	126	16		국 (국토해양부)		
9	도남동		817-5	구	146	20		국(농림부)		
10	도남동		849-8	답	233.5	144		상주시		
11	도남동		850-1	구	3,199.2	404		국 (농림수산 식품부)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자
12	도남동		850-2	도	2,174.6	485		국 (농림수산식품부)		
6	도남동		산39-8	임	9,447	5,530		상주시		
7	도남동		산39-9	임	7,498	1,448		상주시		
8	도남동		산39-10	임	161	161		상주시		
9	도남동		산39-11	임	71	71		상주시		
10	도남동		산39-12	임	768	19		상주시		
11	도남동		산39-18	임	415	286		국 (국토해양부)		
12	도남동		산39-19	임	1,267	326		국 (국토해양부)		
11	도남동		산39-21	임	115,738	315		상주시		
12	도남동		산80	구	297	76		국 (국토해양부)		

※ 관계도서는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시 군

공 고

칠곡군 공고 제2013-670호

칠곡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위한 열람공고

1. 경상북도고시 제2009-410호(2009.09.07)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2. 칠곡군공고 제2010-385호(2010.08.30)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칠곡군고시 제2010-54호(2010.11.04)로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칠곡군고시 제2013-35호(2013.03.28)로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위한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

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26일

칠 곡 군 수

가. 공람기간 : 2013. 12. 26 ~ 2014. 01.17

나. 공람 및 의견제출장소 : 칠곡군청 도시계획과(☎979-6718)

다. 폐지내용

1) 인가폐지시행지 :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55-1번지 일원

2) 인가폐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종 류 : 칠곡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② 명 칭 : 칠곡도고골프장 조성사업

3) 인가폐지 사업의 규모 : A=378,365㎡

4) 지정취소 및 인가폐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주)칠곡도고골프클럽 대표이사 이구형

② 주 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75

5) 인가폐지일자 : 인가폐지고시일

6) 폐지할 토지조서 : 인가시 토지조서와 같음(공람장소 비치)

7) 지정취소 및 폐지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133조제1항16호

위배(실시계획인가조건 미이행)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도시계획과(054-979-67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고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74호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태화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장 주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121-1번지
점용면적 및 위치	면적 : 637.44㎡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73번지 일원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목 적 : 송유관로 매설 시설개요 : 송유관로(D=610, L=591.33m)
공사 기간	당초 : 2008년 01월 06일부터 2013년 01월 05일까지 변경 : 2013년 01월 06일부터 2018년 01월 05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75호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형산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장 주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121-1번지
점용면적 및 위치	면적 : 231.05㎡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1054-1 ~ 서악동 1491번지 일원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목 적 : 송유관로 매설 시설개요 : 송유관로 (D=610, L=235.1m)
공사 기간	당초 : 2008년 01월 21일부터 2013년 01월 20일까지 변경 : 2013년 01월 21일부터 2018년 01월 20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76호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감천,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장 주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121-1번지
점용면적 및 위치	면적 : 916.99㎡ 위치 : 경북 김천시 지좌동 1054-1번지 및 칠곡군 석적면 남율리 793-2번지 구미시 오태동 733-1번지 일원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목 적 : 송유관로 매설 시설개요 : 감천구간 송유관로(D=560, L=283m) 낙동강구간 송유관로 (D=560, L=845.05m)
공사 기간	당초 : 2007년 12월 29일부터 2012년 12월 29일까지 변경 : 2012년 12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29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77호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금호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장 주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121-1번지
점용면적 및 위치	면적 : 316.7㎡ 위치 :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 768번지 ~ 하양읍 남하리 777-1번지 일원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목 적 : 송유관로 매설 시설개요 : 송유관로(D=610, L=316m)
공사 기간	당초 : 2008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11일까지 변경 :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8년 12월 11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80호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자연환경과)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1035)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대구지방환경청
점용 면적	4㎡
점용 위치	해평습지(경북 구미시 선산읍 원리 5-28번지, 산동면 성수리 631-1번지 일원) 달성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파호동 460, 경북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37)
점용 목적	안내간판(615×2,000) × 4개소
공사 개요	야생생물보호 안내간판 설치
허가 기간	2013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12월 18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82호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감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구미시장(농정과) 주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점용면적 및 위치	면적 : 황산(115㎡), 신촌(149㎡) 위치 : 경북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1029-1번지(황산배수장) 경북 구미시 고아읍 신촌리 1034-1번지(신촌배수장)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목 적 : 황산, 신촌배수펌프장 토출박스 시설개요 : 황산배수장(D=1,200㎜, L=15m) 신촌배수장(D=1,200㎜, L=15.2m)
공사 기간	당초 : 2008년 10월 27일부터 2013년 10월 26일까지 변경 : 2013년 10월 27일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84호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형산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경주시장(문화관광과) 주소 : 경북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800)
점용면적 및 위치	면적 : 24㎡ 위치 : 경북 경주시 황성동 1000-2번지 일원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목 적 : 오수관로 매설 시설개요 : 오수관로 L=80m, D=300㎜ 맨홀 1개소, 날개벽 1개소 호안블럭 철거 및 복구 40㎡
공사 기간	당초 : 2008년 11월 17일부터 2013년 11월 16일까지 변경 : 2013년 11월 17일부터 2018년 11월 16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85호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주소 : 경북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3길 14
점용면적 및 위치	면적 : 271㎡ 위치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207-5번지 일원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목 적 : 생곡배수장 토출관로 시설개요 : 토출관로 D=1000㎜×3개소 D=800㎜ × 1개소
공사 기간	당초 : 2008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11월 17일까지 변경 :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8년 11월 17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87호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주소 : 경북 안동시 경동로 323(송현동 371-1) 송현빌딩 5-6층
점용면적 및 위치	면적 : 96.2㎡ 위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수리 1353-8번지 일원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목 적 : 수동배수장 토출관로 설치 시설개요 : 토출박스 L=37m(2.0×1.8×1련)
공사 기간	당초 : 2008년 10월 23일부터 2013년 10월 22일까지 변경 : 2013년 10월 23일부터 2018년 10월 22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91호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감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구미시장(농정과) 주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점용면적 및 위치	면적 : 북산(162㎡), 내고(237㎡) 위치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717번지(북산배수장) 경북 구미시 선산읍 내고리 813번지(내고배수장)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목 적 : 북산, 내고배수펌프장 토출박스 시설개요 : 북산배수장(D=2,100㎜×2EA, L=30m) 내고배수장(D=2,300㎜, L=14m)
공사 기간	당초 : 2008년 11월 25일부터 2013년 11월 24일까지 변경 : 2013년 11월 25일부터 2018년 11월 24일까지

기 타

공 고

영천소방서 공고 제2013-14호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영 천 소 방 서 장

1. 등 록 번 호 : 제 2013-06호

2. 업 종 : 소방시설관리업

3. 상 호 : (주)영일소방

4. 대 표 자 : 정보문

5. 영업 소재지 : 경북 영천시 운동장로 30(1층)

6. 등 록 일 자 : 2013. 12. 18.

◈◈◈

나. 위반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다. 납부금액 : 금2,100,000원(금이백일십만원)

- 체납과태료 :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 가 산 금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6. 참고사항

가.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의 서류를 2013년 12월 13일 까지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보관기간 경과 반송 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2014년 1월 1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 : 054-933-9118 ㈜

" PRIDE GyeongBuk "

우리모두의 자랑 경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미래 인재를 키우는 곳 **People**
대한민국의 아침을 열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대를 앞서 열어가는 곳 **Rising**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정신으로 변화를 선도 **Innovation**
도민의 꿈과 이상이 이루어지는 곳 **Dream**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경북 **Environment**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